

의안번호	2213997
의 퇴 인	문대림 의원
회 답 일	2025. 11. 26.
추 계 번호	25B543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8조제6항 신설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자금을 분담하여야 함.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은 제외함(제6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08조제6항 신설 (자금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자금 분담(안 제108조제6항)

- 현행법 제8조¹⁾는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고 지원 없이 지방비 100%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1)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
2.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을 제외하고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자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을 분담하는 경우 재정부담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출 규모의 변동이 발생하나,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감소하게 되므로 총 재정지출 규모는 변화하지 않음
- － 참고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배수개선 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30ha) 이상 50만제곱미터(50ha) 미만인 예정지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1] 광역지자체별 30ha~50ha 배수개선 및 농촌용수개발 예정지

구분	배수개선 사업			농촌용수개발 사업		
	지구 수	수혜면적	예상사업비	지구 수	수혜면적	예상사업비
총계	258개 지구	10,074.8ha	1조 74억원	44개 지구	1,758.4ha	3,020.6억원
경기	26개 지구	977.0ha	977억원	—	—	—
강원	4개 지구	155.0ha	155억원	1개 지구	43.2ha	119.3억원
충북	8개 지구	297.0ha	297억원	2개 지구	89.0ha	127.5억원
충남	25개 지구	953.8ha	953억원	7개 지구	254.0ha	240억원
전북	22개 지구	831.0ha	831억원	2개 지구	66.0ha	67.9억원
전남	81개 지구	3,235.0ha	3,235억원	—	—	—
경북	35개 지구	1,393.0ha	1,393억원	32개 지구	1,306.2ha	2465.9억원
경남	42개 지구	1,647.0ha	1,647억원	—	—	—
제주	15개 지구	586.0ha	586억원	—	—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5.2.)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주체별 재정변동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추진할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사업규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재정부담주체별 재정변동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